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3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정성국·김 건·서천호

김용태 · 조정훈 · 진종오

곽규택 • 한지아 • 배준영

서지영 · 강민국 · 유용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보건이나 급식·돌봄 등의 사업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폐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

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급식·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및 제2항).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6.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보건·급식·돌봄활동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등) ① 이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등) ① -
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公衆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관	
련이 있거나 國民經濟에 미치	
는 影響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어
	린이집"이라 한다), 「유아교
	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
	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
	교"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
	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업
② 이 法에서 "必須公益事業"	②
이라 함은 第1項의 公益事業으	
로서 그 業務의 정지 또는 廢	
止가 公衆의 日常生活을 현저	
히 危殆롭게 하거나 國民經濟	

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業務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	 _	 	_	-	
 	 	 	 	 	 _		_	_	

- 1. ~ 5. (현행과 같음)
- 6.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 에서 행하여지는 보건·급식 ·돌봄활동 사업